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5391159 판결 [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(변경 전 상호: 주식회사 D)

2. E

변론 종결2024. 12. 11.

판결 선고2024. 12. 18.

주 문

-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,984,997원 및 그중 119,926,502원에 대하여 2024. 9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피고 주식회사 C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피고 E: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

판사김민정

별지